

행정자치부

주의요구·통보

제 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에서는 2016. 1. 25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¹⁹⁾부지 사용을 위한 공유재산(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동 0000번지 ○○○○○○구역 중 일부 토지 3,297,97㎡) 대부²⁰⁾ 신청을 받고 2016. 1. 29. 해당 공유재산을 대부하기로 결정하였다.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이라 한다)」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·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(이하 ‘신재생에너지 사업자’라 한다)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조례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

19) ○○○ 소각장 1기 폐쇄에 따른 지역 난방열 생산원가 개선을 위한 대체 열원(熱源)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2014. 11. 18. 부산광역시, 한국○○○○ 주식회사, 주식회사 부산○○○○, ○○○○ 주식회사 등 다자간 ‘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 주주협약서’를 체결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. 1월경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신재생에너지 사업자)를 설립한 후 2015. 8월 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(사업비 1,674억원) 착공을 하였음

20)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동 0000번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대상 토지임

업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.²¹⁾

그리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²²⁾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을 확약 받아야 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거비용을 공탁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2016. 1. 29.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 ○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축조할 수 있게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앞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과 관련한 조건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21) 법제처 유권해석사례 참조(법제처 14-0857, 2015. 1. 13.)

2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르면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